

대출거래 추가약정서 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

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'은행'이라 합니다)와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 조 목적

이 약정서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"주택"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^{주 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'규제지역')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 1) "세대"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 2 조 처분대상 주택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 조 구입대상 주택

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 의무
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(이하 '정해진 기간')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5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- 제 4 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제 6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 년간 금융기관^{주 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 5)}이 제한됩니다.

주 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 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 6>제 1 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- ① 제 4 조에 따라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(명의이전 완료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②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

채무자 성명	(서명 / 인)		
주소	년	월	일

kakaobank

2022.08.01. 시행

변경 대비표 (대출거래 추가약정서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)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대출거래 추가약정서 (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 제 1 조 목적 이 약정서는 무주택 또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“주택”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(이하 ‘규제지역’)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 5 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 주 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 제 2 조 ~ 제 3 조 (생 략) 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개월 (이하 ‘정해진 기간’)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 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 ② (생 략) 제 5 조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합니다.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향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 6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 ① (생 략) ② 제 5 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 조의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(생 략)	대출거래 추가약정서 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 제 1 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, 이하 “주택”이라 합니다.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‘규제지역’)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 주 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 제 2 조 ~ 제 3 조 (현행과 같음) 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 (이하 ‘정해진 기간’) 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 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 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제 5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② (현행과 같음)	

제 7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<u>향후 3 년간 금융기관^{주 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 5)}이 제한됩니다</u>. 주 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 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 6>제 1 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① (생 략) ② 제 5 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<u>대출실행일(중도금·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)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 조의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/u> ③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<u>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거나,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</u>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	제 6 조 여신거래 약정 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<u>제공일로부터 향후 3 년간 금융기관^{주 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 5)}이 제한됩니다.</u> 주 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 5) 「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 6>제 1 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②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<u>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지 않은 채</u>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	
--	--	--